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 기획예산담당관 】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주민’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다른 별도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함으로 조문 삭제(안 제2조)
- 나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·방법 등은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, 해당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으로 조문 삭제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덧붙임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1월 3일 ~ 1월 17일(15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- 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예산담당관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기획예산담당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팀장 조남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유동원 (790-561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</u> <u>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 	<p><삭 제></p>
<p><u>제3조(법령준수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예산</u> <u>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</u> <u>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</u> <u>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</u> <u>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■ 지방자치법

제12조(주민의 자격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.